제정 2013년 3월 1일 예규 제50호 일부개정 2014년 10월 1일 예규 제63호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」(국무총리훈령)에 따라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오산시 소속 공무원(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"소속 공무원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
- 제3조(고발대상)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,「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「국가공무원법」,「지방공무원법」,「공직 자윤리법」,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.
- 제4조(범죄보고 및 고발주체)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·조사 업무담당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이를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에는 「형사소송법」제234조(고발) 제2항(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)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.
- 제5조(고발여부의 판단) ①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하며,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 10. 1〉
 - 1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
 - 2.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

해당하는 경우

- 가. 200만원(누계금액)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
- 나. 3,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
- 다.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경우
- 라.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
- 3.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
- 4.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경우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5.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
- 6. 그 밖에 범죄의 횟수,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
- 시 고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4. 10. 1〉
- 1. 200만원(공소시효 내 누계금액) 이상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의 경우
- 2.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
- 3. 최근 3년 이내에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경우
- 4. 인사,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 · 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
- 제6조(고발 시기 및 절차)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"사실을 확인한 즉시"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 사실 및 범죄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.
 - ② 시장은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발한다. 〈개정 2014. 10. 1〉
 - ③ 고발은 시장 명의로 고발장 [별지 제1호 서식]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되,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.
- 제7조(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) ①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 [별지 제2호 서식]을 문서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고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

(추 2)

- 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)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제69조제1항에 따라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9조(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) 시장은 공직유관단체(「공직자윤리법」제3 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 단체)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고발 지침을 제정·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운영세칙)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특례)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 범죄 중 이 지침 시행 이후 확인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.

부칙 〈2014. 10. 1 예규 제63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고	발	장

 1. 피고발인 ○ 성 명 : ○ 주민등록번호 : ○ 주 소 : ○ 근무처 : 	
2. 고발취지	
3. 고발내용 ○ ○ ○	
4. 증거물	
	년 월 일 고 발 인 오산시장 (인)
○○○○ 귀하	

[별지 제2호 서식]

범죄혐의사실 고발 처리상황부	결과		부서장	
			7¤ 70	
	처리결과		처분요지	
	7.	일자		
	田 を の の の の			
	か た お お			
실 디	1		-	
의사	고 발 일 자		<u> </u>	
범지혐	· 호	3P° 7P°	주민등록번호	
	상	7	I T	
	Դ	고발당시	선 선	
	ઇ	비위협의	당시소속	
	표· 성			

(孝 2)